

[서식 예]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ㅇ ㅇ ㅇ

피 고 △ △ △

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길 00 주소 00시 00구 00길 00 (우편번호) 전화 000 - 0000

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○○. ○. ○○. ○○시 ○○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 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결혼식을 거행하고 20○○. ○. ○.에 혼인 신고를



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후 피고와 계속하여 동거생활을 하여 왔는데, 피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□□□와 불륜관계를 맺어 오면서 20○○. ○. ○. 원고의 주소지를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로 전출시켜 놓고 위 □□□를 원고로 가장하여 원고도 모르게 20○○. ○. ○. ○○구청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.

2.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〇〇구청장에게 신고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

1.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1통1. 소장부본1통1. 납 부 서1통

 20 ○ ○ 년
 ○ 월
 ○ 일

 원
 고
 ○ ○
 ○ (인)

○ ○ 가정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2, 23조
제기권자	(가사소송법 제23조) ·당사자 ·법정대리인 ·4촌 이내의 친족		
상 대 방	 (가사소송법 제24조) ·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·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,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·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मो &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이혼무효 사 유	·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에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		

※ 제출법원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,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4.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5.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